

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(등기)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. 12. 10.

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장

- 공 고 명: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5. 12. 11. ~ 2025. 12. 24.(14일간)
- 공시송달 대상

대 상 자		장애 유형	반송일	반송사유
성 명	주 소			
고*순	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42, 10*동 ***호	**	2025.12.10.(등기우편)	폐문부재

-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-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
 - 제 출 처: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
 - 제출기한: 2026년 02월 28일까지
 - 주 소: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92번길 15
 - 문의사항: 062-410-8777
 - 구비서류: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
※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유의사항: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,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.